

(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 편람,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)

<유의사항>

- ❖ ‘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’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와 해당 징계위원회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,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
- 비위행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친 후 비위의 유형과 정도, 과실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

분류	정의 및 판단기준
적당 편의	■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,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•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·지식·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•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, 민원인 등과 타협·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•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·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<사례> - 인사(채용)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A는 경력경쟁시험의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시 서류전형위원의 평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학성적이 없는 응시생에게 해당 항목에서 만점이 부여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부적절하게 운영 ➡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
업무 해태	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•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, 관리·감독 소홀, 느장 대응 등의 행태 • 민원신청·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·처리하지 않는 행태 •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,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<사례> - 소속기관 업무시설 증축 설계공사 담당공무원 A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기한에 맞춰 설계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, 당초 책정되었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하여 업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을 유발 ➡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게을리하여 민원 야기

분류	정의 및 판단기준
탁상 행정	■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,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행태 ◇ 판단기준 •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,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 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• 보다 효율적·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•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<사례> - 공무원 A는 건물 보수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예상가격 중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노임단가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단가 및 규격 등을 적용하여야 했으나 전임 담당자가 작성하였던 기존 서식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였음 이후 계약된 금액에서 월급을 지급받는 업체 직원들이 해당 계약이 개정 전의 법령 및 지침 단가 및 근로조건(휴식 등)에 맞춰 지급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단체로 항의하는 등 민원을 야기함 ➡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 그대로 답습하여 민원 야기
관중심 행정	■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•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•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(민원인 등)에게 떠맡기거나,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(민원인 등)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• 규정·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·활용하거나, 법·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•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<사례> - 법정민원인 제조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업체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지연시킴. 이에 민원업체가 감사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자 비로소 민원을 접수하고, 신고증을 발급하는 등 민원 신청업체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함 ➡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 초래